서울특별시의회 제158회 임시회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05. 9. 5.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2005년도 제1회 지하철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 1. 제안경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의안번호 : 제779호

○ 제출일자 : 2005. 8.19

○ 회부일자 : 2005. 8.25

## 2.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비고	
세입예산	1,002,500	912,000	90,500	_	
세출예산	500,918 (채무 82,400)	410,418	90,500 (채무 82,400)	·9호선 : 77,000 (채무 82,400) ·3호선 : 13,500	

※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차액 5,015억 8,200만원은 도시철도공채매출금으로 교통 시설특별회계에 계상하였으며, 채무부담액 824억원은 별도 계상함.

### 3. 편성사유

-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도시철도건설사업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는
  -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에 대한 시비부담액과 2008년 완공을 위하여 연말까지 필요한 추가소요예산을 반영하였고 (채무부담행위 824억원 별도)
  -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사업의 경우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에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음.

### 4.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 ○ 세입

-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9,120억원보다 905억원(9.9%) 증가한 1조 25억원임.
- 구체적으로는 2004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미반영된 133억 8,800 만원 및 일반회계전입금 77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 (A)	%	기정예산 (B)	%	증감 (A-B)	%
	합계	1,002,500	100	912,000	100	90,500	9.9
	순세계잉여금	55,971	5.6	42,583	4.7	13,388	31.4
	일반회계전입금	265,548	26.5	188,436	20.7	77,112	40.9
	잡수입	4,743	0.5	4,743	0.5	_	_
	국고보조금	174,656	17.4	174,656	19.2	_	_
	도시철도공채매출금	501,582	50.0	501,582	55.0	_	_

#### ○ 세출

-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104억 1,800만원보다 905억원(22.1%) 증가한 5,009억 1,800만원임.(채무부담행위 824억 별도)
- 주요내역을 보면,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로 국고 200억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300억원 및 연말까지 추가소요예산으로 시비 470억 원과 채무부담행위 824억원 반영편성
-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는 국고 90억원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 135억원을 반영편성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 (A)	/%	기정예산 (B)	/%	증감 (A-B)	/%
합계		500,918 (채무 82,400)	100	410,418	100	90,500 (채무 82,400)	22.1
건설사업비		483,732 (채무 82,400)	96.5	393,232	95.8	90,500 (채무 82,400)	23.0
	9호선 1단계구간 건설	431,750 (채무 82,400)	86.1	354,750	86.4	77,000 (채무 82,400)	21.7
	3호선 연장건설	50,000	10.0	36,500	8.9	13,500	37.0
	7호선 연장건설	1,512	0.3	1,512	0.4	-	_
	9호선 2단계 기본계획용역	470	0.1	470	0.1	-	_
건설관리비		12,664	2.6	12,664	3.1	_	_
	기본경비	12,374	2.5	12,374	3.0	_	_
	경상경비	290	0.1	290	0.1	-	
예비비		4,522	0.9	4,522	1.1	_	_

# Ⅱ. **검토의견** (전문위원 : 윤병국)

2005년도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1. 우선, 추경예산(안)의 총액규모와 증액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 2005년도 지하철건설본부의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9,120억원
  보다 905억원(9.9%) 증가한 1조 25억원임.
- 추경예산의 편성사유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 및 3호선 연장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 금년도 부족사업비 등을 증액편성한 것임.

#### 2.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보면

- ㅇ 세입예산안
  - 순세계잉여금 559억 7,100만원(133억 8,800만원 증액, 31.4%), 일반 회계전입금 2,655억 4,800만원(771억 1,200만원 증액, 40.9%), 잡수입 47억 4,300만원, 국고보조금 1,746억 5,600만원, 도시철도공채매출금 5,015억 8,200만원을 합한 1조 25억원임.

#### ㅇ 세출예산안

-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은 총 770억원(기정예산대비 21.7%, 증) 이 증가된 4,317억 5천만원이나 채무부담행위액 824억원을 포함하면 당초예산대비 44.9% 증가된 5,14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세출규모가 증대된 것임.
- 그 주요내용을 보면, 민자구조물 인도조건 이행사업비 560억원, 인천공 항철도 개통대비 사업비 30억원, 채무부담액 824억원이 포함된 공구별 추가사업비 1,004억원 등임.
-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사업**은 공사비 133억원, 감리비 2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여 총 50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3. 다음은 주요사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비는 2004년도 본예산 편성후 2005년 1월
  국고 200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시비부담금 300억원과 추가소요예산 470억을 합한 770억원을 추가편성함.
-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사업비의 경우에도 국고 90억원이 추가내시되어
  시비 135억원을 추가편성한 것임.
- 따라서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시비 편성을 통하여 지하철 9호선의 건설사업과 3호선의 연장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당위성이나 편성사유가 타당하다 사료됨.

- 그러나 지하철건설비 국고 및 지방비 부담비율이 4:6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200억원의 추가내 시에 따라 시비부담분이 300억원이어야 하지만 이에 대하여 추가로 470 억원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건설비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부 담비율 4:6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현상은 시비의 세출규모를 가중시켜 자치단체의 재정구조에 부담
  을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고와 지방비의 부담비율에 대한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지하철 건설과 같이 대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시비의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된 부분에 대하여 국비가 지원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재정관리가 요구됨.
- 또한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사업의 경우, 시설비에 채무부담행위 824
  억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44.9%에 해당하는 1,594억을 증액편성한 것은 본예산편성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채무부담행위는 당해연도의 재원형편상 세출예산이나 계속비에 계상하지 못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예산제 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5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하여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채무부담행위는 부채를 통한 투자재원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추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일명, 외상공사라는 점에서 향후 채무부담행위는 최소화 되어야 함.
- 따라서 채무부담행위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주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하철 건설과 같이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사업
   의 경우, 채무부담행위가 최선의 선택인가에 대한 판단의 여지가 있음.
- 추경예산은 본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통제의 취약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가능한한 추경편성을 지양하고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